

특별공급 청약안내(공통)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일정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2021.10.12.(화)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홈’ 건본주택(※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 한정) 은행창구 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08: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약 자격	거주 지역	오산시, 수도권(경기도, 서울, 인천)지역에 거주. 단, ‘일반(기관추천)’ 대상자는 해당 기관장이 정함				
	청약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주	
	기본 자격	해당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혼인기간 중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자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태아 및 입양포함)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세대원 포함) ※ 혼인 전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통장 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기관추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외)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비입주자	타입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공급 한정)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는 무주택으로 봅니다.(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동일 주택형에 한하여 추첨 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 같은 주택형 다른 공급유형의 낙첨자들과 함께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 1호 이상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분양권 등도 주택소유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또는 청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거전용면적	오산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85㎡ 이하 (오산 세교2지구 중흥S클래스 전타입)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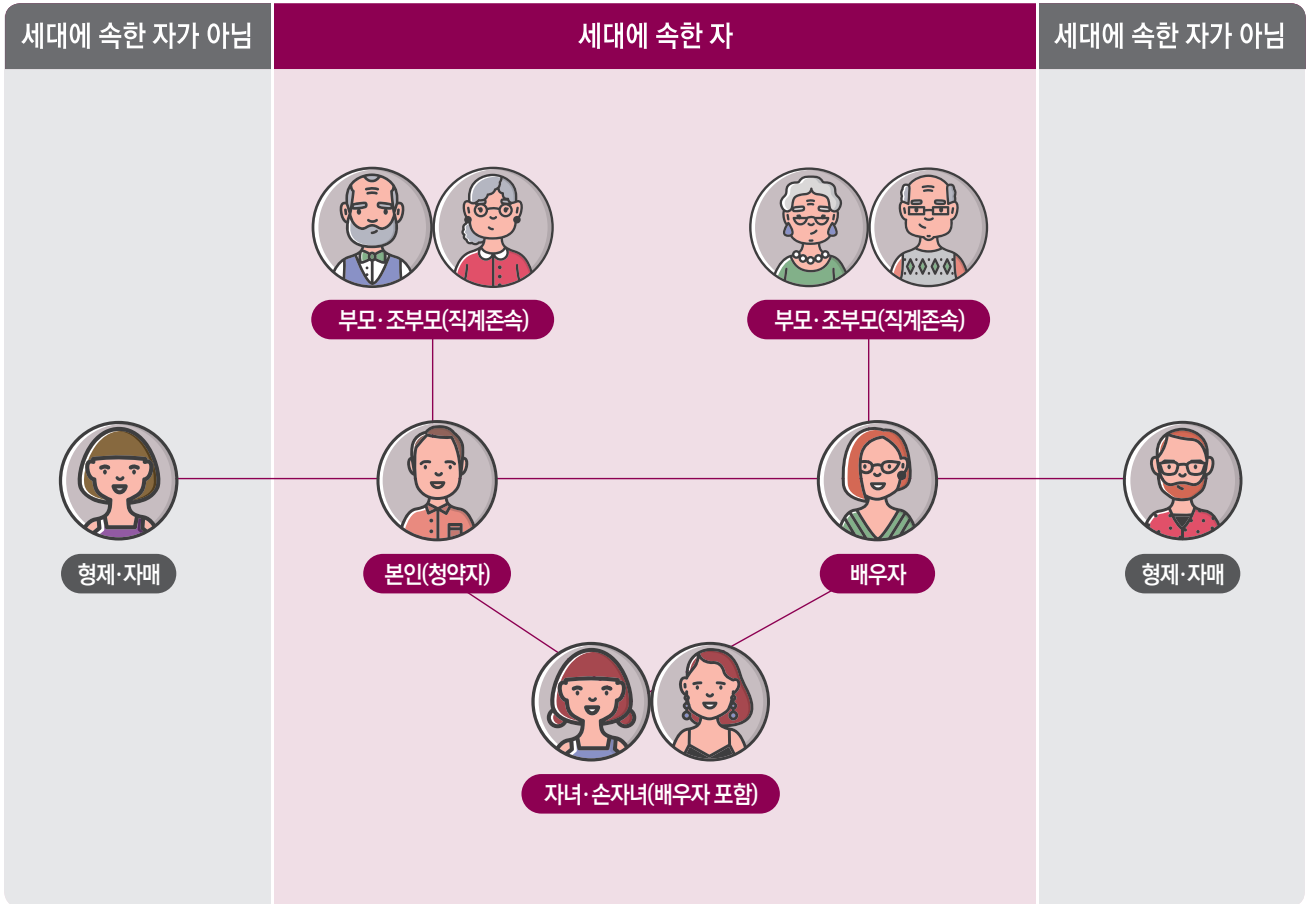
※ 본 제작물은 편집 및 과장상 오류 및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031-378-361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안내(공통)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등이 무주택
 - ※ 배우자의 직계비속(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이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동거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시 세대원 판단기준



※ 본 제작물은 편집 및 과정상 오류 및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031-378-361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